

본인확인	담당자	책임자	영업점장

하나 해외이주유학클럽서비스 이용 약정서

신 청 인	신청인 (예금주):	E-mail:	
	생년월일:	출국예정일:	
	여권번호:	고객번호(은행기재용):	
국 내 연 락 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관계:	
해 외 연 락 처	주소:		
	전화번호:	Fax:	
기본 계좌번호		수시지급 청구시 인감 (서명)	
국내계좌이체 1일 이체한도	당행 본인계좌: 원	타행 본인계좌: 원 (최고 오천만원 이하)	

- 본인의 예금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별도의 양식인 “수시지급청구서”를 다음의 방법으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확인된 경우 은행이 청구서상 내용을 수행함에 따라 위·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Fax 송부 시 본 이용 약정서 상의 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고, 수시지급청구서 또는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확인된 경우
 - E-mail 제출 시 E-mail 주소가 본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고, 수시지급청구서 또는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확인된 경우
- 은행에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변경하거나 본 서비스 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신고(약정해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자필 서명하거나, 현지 영사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임이 확인된 문서를 송부합니다.
- 본인의 보유계좌에서 인출하여 해외송금 하는 경우 수취계좌는 현지은행 본인명외계좌(공동명의 포함)에 한하며 송금한도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로 합니다. 또한 국내계좌이체서비스의 경우 본인명외계좌로만 가능하며, 타행이체의 1일 이체한도는 최고 오천만원 이내에서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인의 보유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금융소득내역/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수시지급청구서”를 Fax 또는 E-mail로 송부하여 요청하겠으며, 본 약정서로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 E-mail 주소와 일치하고,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본인이 요청한 해외주소 또는 신고된 E-mail 주소로 은행이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 금융소득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금융소득내역/원천징수영수증 우편발송의 경우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수시지급청구서”에 의한 무통지급이 발생할 경우에 본인의 별도 요청이 없는 본인 앞 예금잔액 통지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하나 해외이주·유학클럽서비스 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약관을 교부 받았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서비스 내용에 동의합니다.

자필기재	본인은 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 서비스 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약관을 교부 받았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서비스 내용에 동의합니다.
------	--

20 년 월 일

본인

(인/서명)

[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 서비스 약관]

제1조 (목적)

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 서비스 약관(이하 '약관' 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 및 해외에서 근무, 거주 또는 유학(예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인 하나 해외이주 유학클럽(Hana Overseas Club)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제공자인 KEB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용자인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2조 (서비스의 이용대상)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은행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제3조 (서비스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 FAX 또는 E-mail로 고객의 수시 또는 비정기적인 지급지시를 받아서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지급처리, 단, 타인 앞 해외송금 및 계좌이체는 제한
2. 자금운용 및 보관 서비스 : 여유자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거나 대여금고를 이용토록 제공

제4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시간은 고객의 거주지에 불구하고 은행의 국내 영업시간으로 한다.
- ② FAX 및 E-mail 등에 의한 수시지급이 은행의 영업시간 중에 접수되는 경우 당일 중 처리하고, 은행의 영업시간 이외에 접수되는 경우는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의 영업일 중에 처리하기로 한다.
- ③ 서비스 신청 당일 수시지급청구서 또는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FAX 또는 E-mail을 통한 수시지급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한다.

제5조 (기본계좌)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은 요구불예금을 기본계좌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약정방법)

- ① 고객이 은행에 내점 하여 서비스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약정서에 자필 서명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 ② 고객이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내점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영사의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임이 확인된 문서를 송부하여 은행에서 수령을 확인한 때 그 약정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거래 내용의 전자 녹취)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자 녹취를 시행한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처리방법)

- ① 수시지급거래는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FAX 또는 E-mail에 의한 고객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고객의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처리한다.
- ② 전항에 의한 수시지급거래는 FAX로 송부 받은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인감 또는 서명과 일치하고, E-mail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E-mail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처리하기로 한다.
- ③ 타행환의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일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의 기본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익영업일에 재처리 한다.

제9조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수시지급거래 서비스 업무 범위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서비스 신청내용의 정정 및 취소)

서비스 신청 후 신청내용의 정정 및 취소는 은행의 지급거래 실행 전에만 가능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미 실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서비스의 제한)

-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1. 기본계좌의 잔액이 서비스 신청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미결제 타점권이 있을 때
 2.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입·출금계좌의 잔액증명이 발급되었을 때
 3. 입·출금계좌가 해약되었을 때
 4. 법적 지급제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5. 수시지급청구서 상의 서명 또는 인감이 상이하거나, E-mail 주소가 상이한 경우,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서비스 제한은 해당 영업일간에 한한다.

제12조 (계좌이체의 제한)

- ① 본인명의 계좌이체(자행) 서비스의 1일 이체한도는 고객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② 본인명의 계좌이체(타행) 서비스의 1일 이체한도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 (이용수수료 등)

- ①이용수수료, 타행환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는 기본계좌에서 자동 인출한다.
- ②이용수수료의 요율 및 계산 방법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은행은 거래실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용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금융소득내역/원천징수영수증 송부)

- ①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고객이 요청한 해외 주소 또는 신고된 E-mail 주소로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금융소득내역/

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한다.

1. 고객이 FAX로 요청하는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약정서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고, ARS에 의한 계좌비밀번호인증이 되었을 때
 2. 고객이 E-mail로 요청하는 경우 신고된 E-mail 주소와 일치하고,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되었을 때
- ②우편발송 시 우편비용 등 부대비용은 기본계좌에서 자동인출할 수 있다.
- ③은행이 제1항에 의해 거래내역/예금잔액증명서/금융소득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한 경우 고객이 이를 받지 못하더라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변경, 사고사항의 신고)

- ① 은행에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 변경 등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신고(약정해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제6조를 따른다.
- ② 고객이 신고된 E-mail 주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E-mail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고객이 FAX로 요청하는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약정서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였을 때
 2. 고객이 E-mail로 요청하는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약정서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고, 수시지급청구서를 보낸 E-mail 주소와 이용약정서에 기재된 E-mail 주소가 일치하였을 때
- ③ 주소변경 등 경미한 제신고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 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 ①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2.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연체하는 등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은행은 제1항 각호의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신고(약정해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제6조를 따른다.
- ② 제16조 1항의 사유로 이용이 정지되어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③ 고객이 최종 거래일로부터 2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유선, 신고된 FAX 및 E-mail 등으로 “서비스 해지여부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면책)

- ① 고객이 은행에 내점 하지 아니하고 현지 영사의 인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된 약정서에 대해 은행은 고객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여기고, 약정서의 위·변조 등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고객이 FAX로 송부한 수시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위조 또는 변조 등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고객이 E-mail로 송부한 수시지급청구서의 경우 신고된 E-mail 주소가 일치하고,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본인의 보유계좌에서 해외 송금하는 경우 수취계좌는 현지 본인명의계좌(공동명의 포함)에 한하며, 고객이 요청한 수시지급청구서에 따라 해외송금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의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 외환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금 또는 거래 별 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좌이체 제한)

제12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21일 이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대한 타인명의 계좌이체 서비스는 2013년 02월 21일부터 금 오백만원 이내로 제한되며(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FAX로 한정),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한다.

2016.6.7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344